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5 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윤건영·조 국·박지원

이인영 • 이기헌 • 소병훈

김태년 · 김병기 · 복기왕

박수현 • 권향엽 • 강준현

박지혜 • 박해철 • 염태영

김남근 • 박용갑 • 박희승

박선원 • 문대림 • 최민희

김병주 • 이광희 • 신정훈

양부남 • 이재강 • 김 현

장종태 의원(28인)

제안이유

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 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,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선거권·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'6개월'에 서 '12개월'로 하고,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·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(안 제9조제5항).
- 나.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·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 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 를 지역금고로 함(안 제23조의2).
- 다.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,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하고,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).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미성년인 회원
- 2.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회원
- 3.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 제23조의2제1항 중 "금고"를 "지역금고"로 한다.

제72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 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

제3장에 제10절(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

제73조의3(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)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"금고등"이라 한다)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,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 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(이하 "부실자산"이라 한다)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(이하 "관리회사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- 1. 금고
- 2. 중앙회
- 3. 금고가 출자한 회사
- 4.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
- 5.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
-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.
-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3조의4(업무)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
- 2.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·추심(가압류, 가처분,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 및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

- 3.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.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
 - 나.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·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· 대여·개발 처분
 - 다.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)의 인수
- 4. 금고등의 부실자산 보전・추심 수임(受任)
- 5.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
- 6. 합병,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 관리·매각 및 매매 중개
- 7.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 · 비업무용 자산의 공매(公賣)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
- 9.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10.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
- 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
- 12.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
- 제73조의5(자금의 조달 및 운용)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 - 1. 금고,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

- 2.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
-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-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- 1. 부실자산의 매입
- 2.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·제7호·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
- 3.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
-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- 1.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
- 2. 국채·공채의 매입과 정부,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- 제73조의6(다른 법률의 준용)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44조, 제45조,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사"는 "관리회사"로, 제45조 중"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"는 "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"로 본다.

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고와 중앙회"를 "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(이하 "금고등"이라 한다.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고,

같은 항 제2호 중 "중앙회"를 "중앙회 또는 관리회사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"금고 또는 중앙회"를 각각 "금고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금고 또는 중앙회를"을 "금고등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"금고 또는 중앙회"를 각각 "금고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원을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 또는 선거 일을 공고할 때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아 혀 행 제9조(회원과 자본금) ① ~ ④ 제9조(회원과 자본금) ① ~ ④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 (5) -----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정관으로 정하는 -----. 다만, 다음 각 호의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 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 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 한할 수 있다. 한할 수 있다. <신 설> 1. 미성년인 회원 2.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<신 설>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미만 인 회원 3.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 <신 설> 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 ⑥ ~ ① (생 략) ⑥ ~ ① (현행과 같음) 제23조의2(선거관리의 위탁) ① 제23조의2(선거관리의 위탁) ① 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지역금고-----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「선거관리위원회 법」에 따른 구·시·군선거관

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

제72조의3(준비금의 용도 등) ① 제72조의3(준비금의 용도 등)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 용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5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(현행과 같음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 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 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 의 대여
-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3(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 사의 설립) ① 금고 및 중앙회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(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"금고등"이라 한다)의 부실예 방 및 경영개선, 금고등이 보 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 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(이하 "부실자산"이라 한 다)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

리회사(이하 "관리회사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- 1. 금고
- 2. 중앙회
- 3. 금고가 출자한 회사
- 4.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
- 5.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
-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.
-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「상 법」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.

제73조의4(업무) 관리회사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
- 2.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· 추심(가압류, 가처분, 「민사 집행법」에 따른 경매 및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 및 채무관 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
- 3.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

<신 설>

- 의 업무
- <u>가.</u>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<u>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</u> 취득
- 나.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

 보전・증대하기 위한 부

 동산의 매입・대여・개발

 처분
- 다.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 전환에 따른 지분증권 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 을 말한다)의 인수
- 4. 금고등의 부실자산 보전・추심 수임(受任)
- 5.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・채권추심수임
- 6. 합병,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 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 관리·매각 및 매매 중개
- 7.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・비업무용 자산의 공매(公賣)

<신 설>
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
- 9.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10.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
- 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
- 12.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 하는 업무
- 제73조의5(자금의 조달 및 운용)
 -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 - 1. 금고,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
 - 2.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 금
 -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 -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

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- 1. 부실자산의 매입
- 2.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
 ·제7호·제8호 및 제10호의
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
 자금
- 3.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
-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.
- 1.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
- 2. 국채·공채의 매입과 정부,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 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73조의6(다른 법률의 준용) 관 리회사에 관하여는 「한국자산

리회사에 관하여는 「한국자산 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 률」 제23조, 제44조, 제45조,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 용한다. 이 경우 "공사"는 "관 리회사"로, 제45조 중 "「민사 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 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

<신 설>

제74조(감독 등) ① 주무부장관, 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 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. 다만,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 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.

- 1. (생략)
- 2. <u>중앙회</u>에 대한 감독: 주무부 장관
- ② 주무부장관, 특별자치시장 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 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

	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
	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
	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"는
	"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
	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
	경우"로 본다.
4]	74조(감독 등) ①
	<u>금</u>
	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(이하
	"금고등"이라 한다. 이 조에서
	같다)
	1. (현행과 같음)
	2.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
	2
	<u> 금고등</u>

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 은 금고에 한정한다.

-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수 있고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.
- ④ 주무부장관은 <u>금고 또는 중</u> <u>앙회를</u>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, 예 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.
- ⑤ 주무부장관, 특별자치시장 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<u>금고 또는 중앙회</u>에

③
금고등
④
⑤
금고등

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, 특별자치시 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 ・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⑦ (생 략)

· 1.·2. (현행과 같음)
6
<u> 등</u>
⑦ (현행과 같음)